13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 직업관련성 | 높음 |
|---|----|
|---|----|

1 개 요

근로자 ○○○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병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의약분업사태로 인한 파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어 연구범위 외에 종양환자의 방사성동위원소 근접처치시술(brachytherapy)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2011년 가슴의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2년 1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는 애초 연구범위에 한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였으나, 의약분업으로 인근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환자수가 폭증하자 진료와 치료업무에 치중하게 되었다. 처치시술은 진료 대상 암환자 전원에 대하여 방사선 동위원소의 삽입 및 제거, 동위원소가 삽입되어 있는 72시간동안 드레싱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주로 자궁경부암환자의 근접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식도암, 구강 내설암 환자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설치와 제거도 담당하였다. 재직기간동안 처치한 환자의 수는 매주 6명 정도로 6개월 동안 15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물리적요인(전리방사선)

5 의학적 소견

○○○는 최초 가슴통증과 근육통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방문하여 수행한 혈액검사에

서 백혈구수가 41,490 개/uL로 측정되어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시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특이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으며, 의무기록상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발병 8년전부터 건강검진기록을 조회한 결과 혈액검사에 이상 소견 없었고, 발병년도에 이상지질혈증(TG 473 g/dL)만 진단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업무를 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수부는 보호구 없이 노출이 되었던 점, 같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기관 내 방사선 출입관리구역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되었던 정황근거, 사업장의 같은 부서의 동료근로자들의 높은 피폭선량 등을 근거로 보아 방사선 피폭선량은 기록된 총 누적선량, 연간 최대 노출선량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